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32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박성훈 · 이인선 · 서명옥
이현승 · 박충권 · 김성원
고동진 · 나경원 · 김기현
김승수 · 박수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

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제6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를 “범위·지급절차,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및 영수증의 서식 등에”로 한다.

1.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빙서류 구비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⑥ 관서운영경비의 <u>범위, 지급 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 방법 등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금으로 지급하되 최종적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빙서류 구비를 생략할 수 있다.</u> ⑥ -----범위·지급 절차,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및 영수증의 서식 등에----- ----- -.
--	--